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연구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Relating to Digital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홍 재 현(Jae-Hyun Hong)*

〈목 차〉

- | | |
|--------------------------|-----------------------|
| I. 서론 | 4. 일본 |
| II.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서관 면책의 정당 | 5. 호주 |
| III. 국외 도서관 면책 규정 분석 | IV. 우리나라 도서관 면책 규정 분석 |
| 1. WCT | 1. 현행 저작권법 |
| 2. EU 지침 | 2. 개정 저작권법틀안 |
| 3. 미국 | V.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복제·전송과 관련한 도서관 면책 규정을 WCT와 EU 지침, 미국, 일본 및 호주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법문의 변화와 특징을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의 제28조를 각각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공정사용, 도서관 면책, 디지털도서관, 복제권, 전송권, 저작권 제한

Abstract

The study has proceeded through examining and analyzing related laws and articles on library exemption relating to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 digital environment. First of all, the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in detail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ion of library exemption in WCT, EU, U.S., Japan, and Australia. After analyzing of the article 28 in current Copyright Act and amended proposal for Copyright Act in Korea, it found the regulation to be inadequate. As a result of the legal analysis, this paper is proposing a revised plan of the article 28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Key Words : copyright limitation, digital library, fair use, library exemption, right of reproduction, right of transmission

* 중부대학교 사회학부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hong@joongbu.ac.kr/http://lis.joongbu.ac.kr)
 • 접수일 : 2002. 8. 21 • 최초심사일 : 2002. 8. 30

I. 서 론

현재 디지털도서관은 종래의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정보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저작물 원문자체를 디지털화하여 이를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자에게 배달하는 정보제공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도서관이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장하고 있는 종이기반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 상 권리자가 부여받은 권리는 일종의 '배타적'(exclusive) 성격의 권리이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도서관 면책 사유를 벗어나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그 도서관의 소장물이지만,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은 도서관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용자 측에서는 과거와는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편의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용자는 도서관을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전 세계의 정보 자료를 전자적 영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전혀 품질의 열화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외부 저장매체에 디지털 형태로 쉽고 은밀하게 복제할 수 있으며, 프린터로 인쇄해서 볼 수도 있다. 더욱이 디지털로 복제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를 편집, 수정 또는 개변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그 이용 범위가 한정되어 도서관의 정보이용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였던 것이, 이제는 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정된 이용범위를 넘어서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용량도 증가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은 종래의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 변혁에 직면하게 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저작권법 제도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디지털 복제를 복제권에 수용하였고 전송권을 신설하였다. 동시에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 하에 디지털형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의 제한을 담은 도서관 면책 규정이 개정 저작권법(2000년 1월 공포됨) 내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기대를 가져서인지 개정된 저작권법과 관련 시행령에 의한 도서관 면책은 기대와는 달리 각계로부터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큰 실망을 안겨다 주었

다. 제한된 도서관에서의 자료의 디지털화 및 도서관간의 전송 허용 규정은 우리가 원하는 바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저작자 및 출판사 등의 저작권자로부터는 이 규율은 일반적으로 도서관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전송을 거의 모든 도서관에 허용하고 있다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외로부터는 국제조약 특히 세계지적 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라 한다)을 위반하는 규율로 거론될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국내외로부터 엄청난 압력과 따가운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대수술이 법제처에서 서둘러 추진되게 되었다. 이는 저작권자, 정보 관리자로서의 사서 및 최종이용자의 그 어느 누구의 요구도 충실하게 수용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앞서서 디지털 복제와 전송의 권리 제한을 줄속 규율함으로써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함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마련된 개정법률안은 이미 2001년 6월 입법 예고를 거친 바 있으며, 2002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기대했지만 그 시기를 넘긴 채 현재 국회에서의 처리를 다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복제와 전송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 및 도서관 상호간의 전송을 다루는 면책 규율이 WCT와 EU, 미국 등의 국가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욱이 문화산업이 우위를 차지하는 21세기에서는 저작권 보호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어느 특정 국가나 어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주장은 혹독한 비판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와 '조화'(harmonization)를 이루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도서관 면책 사유나 조건을 법에 수용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해답을 모색하여야 할 긴박하고도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첫째,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도 도서관 면책이 필요한지 그 정당성을 살펴보고 둘째, WCT와 EU 지침, 미국, 일본 및 호주 저작권법에서 디지털복제·전송과 관련한 도서관 면책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각각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현행 저작권법과 입법 예고된 개정저작권법률안에서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 도출된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들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면책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과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관련 법 자체와 선행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문헌분석방법을 취하였으며 기타 관련 단체들의 자료 및 견해들도 참조하였다. 한편 본고는 디지털 환경

에서의 도서관면책 규정을 분석하였으므로, 이를 실제 운용하는데 필요한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 및 권리보호시스템 개발에 관한 것은 제외하였다.

II.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서관 면책의 정당성

저작권법은 창작자로서 정보권리자에게 일정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를 향상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 구조를 취함으로써 권리와 이용자간의 권리의 균형을 신중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체적으로 각 국의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해 저작권 제한의 하나로서 도서관에 예외적인 취급을 해 오고 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지식·정보 및 문화의 보존과 전달이라는 사회적, 문화적,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본래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저작물의 이용 및 전파를 통한 문화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도 부합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다시 말해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권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라 하겠다.

만약 도서관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서는 어떤 저작물이라도 이용할 수 없게 한다면, 도서관의 기본인 공공봉사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고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문화의 발전을 강조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도서관 면책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제22조에서 제35조에 걸쳐 저작재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의 원활한 유통 촉진이라는 공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권리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 제28조는 도서관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비영리적 시설임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 특권을 도서관에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은 열람자들을 위한 정보제공 등 봉사의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도서관이 문화적·공공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규율된 이러한 제한 규정은 아날로그 환경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었다. 때문에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검색환경을 수용한 디지털도서관에 아날로그 환경에서 적용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서관 면책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정보는 실제로 이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아날로그 정보와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도 도서관 면책이 불가피하다는 그 필요성에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규율하는데 있어서 아날로그 환경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1999년 12월에 개정된 우리의 현행 저작권법은 변화된 저작권 환경을 수용하여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관한 제한을 담아내었다. 그러나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과연 그러한 예외적인 취급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¹⁾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상의 도서관면책 규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 개정저작권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도서관 면책의 규율이 현재 어떻게, 어떤 범위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Ⅲ. 국외 도서관 면책 규정 분석

1. WCT

WCT는 각 국의 정책 결정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조약으로 국제적인 규범이라 할 수 있다. WCT는 변화된 저작권 환경을 수용하여 새로운 권리로 배포권(제6조), 대여권(제7조), 공중전송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제8조) 등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송권도 이 규율을 반영하여 신설된 조항인 것이다. WCT 제8조에 조문화된 공중전송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그러나 WCT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어 각 국이 주시했던 디지털 복제에 관한 규정을 아쉽게도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그 발목을 붙잡은 것은 일시적 복제의 복제권 포함 여부에

1) 최병규,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제54호(2001년 여름호),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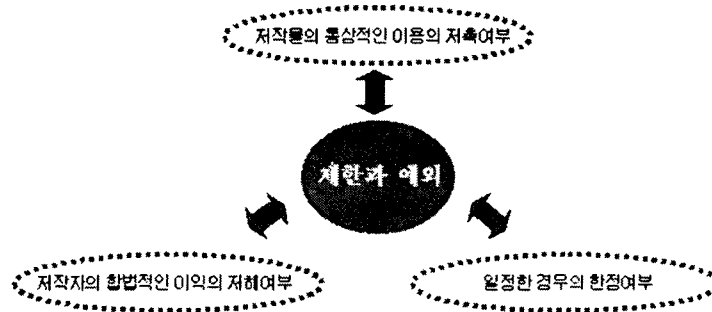
관한 것이었고, 각 국이 램(RAM)에의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에 포함시켜 규율할 것이냐를 놓고 끝내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문서(*agreed statements*)는 베른협약 제9조의 복제권 규정을 디지털 환경에도 적용하며, 특히 저작물의 디지털 이용에 대하여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전자매체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것도 베른협약 제9조의 복제로 본다고 언급하는 차원에서 이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WCT는 저작자의 정신적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보장과 더불어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의 결과로서 문화 발전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권리의 제한도 동시에 규율함으로써 저작물 생산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즉 각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한과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일정한 조건에 한하여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WCT에서 조문화된 각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 규정인 제10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1항	계약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어문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0조 2항	계약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WCT의 제10조 ‘제한과 예외’ 조항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베른협약의 수준을 넘어 복제권 제한에 관한 권리 제한 조항을 모든 권리 제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규율함으로써 복제권 뿐만 아니라 공연권이나 공중전송권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아래의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른바 3단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들 각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내법에 존재하는 제한과 예외도 그것이 국제적인 규범에 비추어 판단할 여지를 제시함으로써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과 충돌하는 이용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저작권 보호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이제까지 느슨하게 운영되던 각 국의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과 해석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한편 디지털 복제 및 온라인 전송의 제한과 관련한 도서관면책 규정은 WCT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조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제10조에 규율된 각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 규정에 입각하여 규율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국이 규율하는 도서관의 면책도 이 3단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할 경우에 적용됨을 권고 받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1〉 제한과 예외 적용의 전제조건

2. EU 지침

유럽공동체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1997년 12월 10일에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지침안』²⁾을, 이어 1999년 5월 21일 이를 수정한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수정지침안』³⁾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의 완성판인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Directive)』⁴⁾을 2001년 5월 22일에 발표하였다. 본 지침의 규정 중 도서관의 디지털 복제 및 온라인 전송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CT의 방침을 이행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장 제2조의 복제권에 ‘디지털 복제’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디지털 복제 행위는 복제권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다(제2장 제5조 1항).

둘째,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공중 전송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인 ‘공중전송권’(제2장 제3조 1항)을 새로이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셋째, 반면에 본 지침은 공익을 위한 예외 또는 제한도 허용하여 정보이용권의 도모를

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Brussels, 10.12.1997 COM(97) 628 final 97/0359 (COD).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intprop/news/copyen.pdf>

3)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mended 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ing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Brussel, 21.05.1999 COM(1999) 250 final 97/0359/COD.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en/intprop/news/copy2en.pdf>

4)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http://europa.eu.int/eur-lex/pri/en/oj/dat/2001/l_167/l_16720010622_en00100019.pdf>

동시에 피하고 있다. 그 하나로서 도서관 면책을 명시적으로 제2장의 제5조 예외 및 제한 (*Exceptions and limitations*)중 제2항의 (c)에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기관 또는 박물관에 의하거나 또는 기록보존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정 복제행위에 관해서는, 그러한 복제행위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이 EU 지침은 이 규정의 적용되는 곳을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기관 또는 박물관에 의하거나 또는 기록보존소로 제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도서관 면책을 ‘특정한’ 경우의 제한된 ‘복제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율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본 조항에 따르면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복제행위라 할 지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도서관에 복제권의 면책이 주어진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도서관에서의 복제권의 제한이 특정 조건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본 지침은 예외들 또는 제한에 관한 전체적인 조항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정상적인 이용에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적용됨”(제2장 제5조 5항)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넷째, 그러나 본 지침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도서관 면책에 관한 규정 중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권 제한은 조문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지침에 따른 예외 또는 제한들은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온라인 전송’과 관련한 이용까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EU 각 회원국의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에게 관의 전송서비스를 하고자 할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무단으로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의 본 지침상의 도서관 면책 내용은 앞으로 EU 회원국 각 국의 저작권에 관련한 입법을 수정, 개정하는데 기본원칙으로 작용할 것이다.⁵⁾

3.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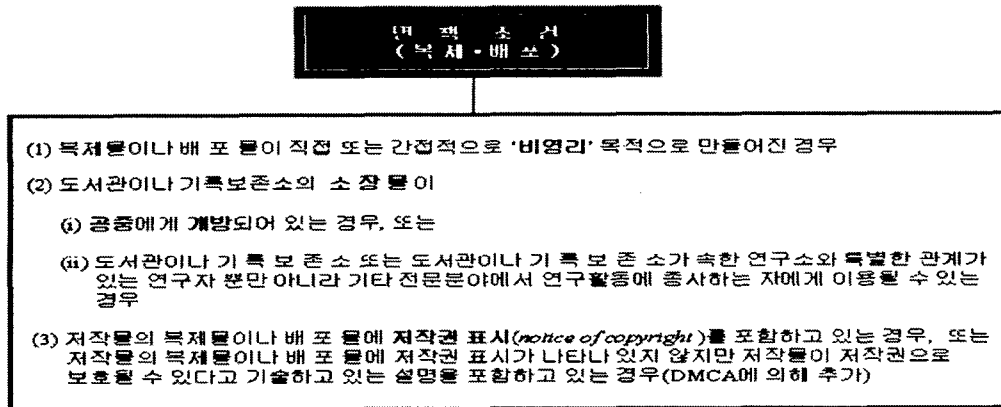
미국 저작권법은 제107조의 공정사용(*fair use*)의 한 형태로서 제108조에 특정한 상황과 조건 아래 도서관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제108조(*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5) 본 지침의 효력은 유럽공동체의 관보에 공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제4장 제14조).

Reproduction by libraries and archives)는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가 행하는 여러 경우를 상정하여 특정한 상황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전형적인 공정사용에 이르지 않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의 복제·배포 행위에 대해 면책되도록 규율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두 차례씩 개정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1998년 10월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이하 DMCA라 한다)⁶⁾이다. 이 DMCA는 디지털 창작,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그간의 논란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본격적인 처방으로 발표된 저작권법이다. 현재 이 DMCA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 및 개정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 중의 하나이다. 이에 총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DMCA⁷⁾의 내용 중 제4편의 기타 규정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제404조의 도서관 면책(*Sec. 404. Exemption for libraries and archives*) 내용을 수용한 제108조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08조 (a)항에서는 (b)항과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상황과 조건 아래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 직원이 직무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1개만 복제하거나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하는 경우 아래의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은 엄격한 세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2> 도서관 면책 조건

또한 동 법 제108조의 (b)항에서 (h)항까지는 전술한 바의 일반적인 도서관 면책 이외

6) Pub. L. No. 105-304, 112 Stat. 2860(1998. 10. 28)

7) DMCA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편 - WIPO조약 이행; 제2편 - 온라인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 제3편 - 컴퓨터 유지 또는 보수에 관한 저작권 면책; 제4편 - 기타 규정들; 제5편 - 특정한 독창적인 디자인의 보호.

의 특별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의 도서관 면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1) 보존, 안전, 또는 연구용 납본을 위한 디지털 복제

동 조 (b)항에서는 “보존(preservation)과 안전(security)을 위하여, 또는 (a)항 (2)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 ‘연구용 납본’(deposit for research use)을 하기 위하여 ‘미발행된 저작물’(unpublished work)을 ‘3부’에 한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큰 변화는 DMCA의 제404조가 기존의 ‘사진복제 형태’(facsimile form)로만 제한한다는 조문의 삭제와 과감히 단행함으로써, 미발행된 저작물의 보존 및 연구용 납본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전폭적으로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DMCA는 복제물의 수도 늘려 종래의 1부에서 3부까지로 허용함을 명확화 하였다. 디지털형식으로 3부 복제 허용은 DMCA가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작업반이 보존용 디지털복제 중 이용목적의 단 1부를 포함해 3부를 만들 수 있게 제안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면책규정은 미발행된 저작물의 보존 및 연구용 납본을 목적으로 한 경우 종래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물을 3부까지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자도서관의 실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항의 면책 여부는 DMCA에 의해 신설된 아래의 각 호의 단서를 엄격하게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복제되는 복제물이나 음반이 현재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 그리고
(2)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된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배포되지 아니하거나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건물 밖에 있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체 목적을 위한 디지털 복제

동 조 (c)항은 “복제물이나 음반이 ‘파손’, ‘훼손’, ‘분실’, ‘도난’ 또는 ‘저작물이 저장된 형식이 쓰이지 아니하는 것(if the existing format in which the work is stored has become obsolete, DMCA에 의해 추가)’이 된 경우에 한하여 복제물이나 음반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저작물’(published work)’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로 ‘3부’까지 복제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항의 면책은 앞에서 살펴 본 (b)항 내의 각 호와 동일한 단서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 항에서 눈에 띄는 큰 변화는 발행 저작물을 대상으로 대체목적을 위한 복제의 경우 디지털 형식으로까지 확대 허용한 점과 3부까지 그 부수를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

하게 된 것은 앞서 살펴 본 (b)항과 마찬가지로 DMCA의 제404조에 의해 '사진복제 형태'로만 한한다는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1부에서 3부까지 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조문인 '쓰이지 아니하는 형식'이란 DMCA에 의해 새로이 추가된 조문으로 "본 항의 목적 상, 어떤 형식으로 저장된 저작물을 인지 가능하게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계나 장치(*machine or device*)가 더 이상 제조되지 않거나 상업적인 시장에서 더 이상 합리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의 형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미국법과 달리 이러한 면책사유를 전혀 법에 수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논문이나 기사의 1부 복제·배포

동 조 (d)항은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장물이나 정기간행물의 기사 또는 기타 기고문의 1부만을 복제한 복제물,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다른 저작물의 일부만을 복제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1부 만들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 때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복제물은 이용자가 요청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 또는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에 적용된다. 단, 본 조항의 면책이 부여되는 것은 다음의 두 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러나 이 면책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환경에만 적용된다.

(1) 그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자의 소유물이 되고,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개인적인 연구, 학문, 또는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이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2)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주문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청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경고문을 눈에 띄게 게시하고, 그 주문 서식에 그러한 경고문을 포함시킨 경우

(4) 학문목적의 절판된 저작물의 복제·배포

동 조 (e)항은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정당한 가격(*fair price*)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전술한 바의 (d)항의 각 호와 동일한 두 가지 조건 하에서 그 저작물 전체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복제물은 이용자가 요청을 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 또는 다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물을 이용하여 만든 전체 저작물이나 그에 상당한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나 학문목적의 절판된 저작물의 복제에 부여되는 이러한 면책도 역시 아날로그 환경에만 적용된다.

(5) 뉴스 프로그램의 복제·배포

동 법 (f)(3)은 도서관이 한정된 수량의 시청각형태의 뉴스 프로그램 복제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6) 단일의 동일한 자료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연관됨이 없
이 따로 행하는 경우의 복제·배포

동 조 (g)항은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및 배포권은, 단일의 동일 자료의 복제물
이나 음반을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연관됨이 없이 따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확
대 적용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본 조항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었는데, 그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본 항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로 다수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여러 사람에
게 나누어주기 위한 복제 또는 1부일지라도 조직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또는 도서관이 구
독을 대신할 목적으로 복제물이나 음반을 모으는 것을 방지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
한 법적 조치라고 생각된다.

(1)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 직원이 그것이 동일한 자료의 다수 복제물이나 음반의
연계되거나 협조된 복제 및 배포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한 번에 하는지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하는지, 그리고 1인 이상의 개인이 모여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집단의 구성
원이 개별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2)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그 직원이 (d)항에 규정된 자료의 하나 또
는 다수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조직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데 관여한 경우. 다만, 목적으
로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용으로 수령하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구독신청을 하거나 구입하여야 할 저작물을 이러한 복제물이나 음반을 모으는 것으로 대체
하려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지하지 아니한다.

(7)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의 디지털 형태의 복
제, 배포, 전시, 실연

동 조 (h)항 제1호는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⁸⁾의 마지막 20년 동안에는 같
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을 포함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는,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가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제2호의 (A), (B), (C)에 규정된 조건 모두에 해
당하지 않는 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연구, 학문,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그러한
저작물 또는 음반의 복제물 또는 그의 일부를 ‘사진복제’ 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배
포’, ‘전시’ 또는 ‘실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DMCA에 의해 추가).

8)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1998년 저작권 보호기간연장법
에 의해 보호기간이 연장된 결과, 일반적으로는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 보호되지만, 1978
년 1월 1일 전의 저작물은 발행으로부터 95년 간 보호된다. 그리고 1963년 이전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
작권 보호를 갱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라진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당
시에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제2호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해 면책되는 복제, 배포, 전시 또는 실연을 제한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 (A) 저작물이 통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때
- (B)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때, 또는
- (C)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저작권청장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A) 또는 (B)에 규정된 조건이 적용된다는 통지를 한 때

또한 제3호는 “본 조에 규정된 면책은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이외의 다른 이용자에 의한 후속 이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DMCA에 의해 추가)”고 함으로써 ‘관내’의 제공에 한하여만 면책이 허용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 신설된 조항의 의의는 이렇듯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에는 도서관은 저작물이 ‘통상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디지털 형태’로 그 저작물이나 일부를 복제하여 이용자의 연구, 학문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 하겠다.

4. 일본

일본도 1997년과 1999년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유선, 무선을 불문하고 공중에 대한 송신을 모두 일컬어 「인터랙티브 송신」이라 정리하였고, 송신가능화를 포함하여 인터랙티브 송신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확대하였으며, 인터랙티브 송신에 관한 실연가·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창설하였으며, 동일 구내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송신에 관한 권리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팩시밀리나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동일 구내 LAN을 통해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은 법 제23조의 공중송신권이 미친다. 그러나 제5관 제31조에 조문화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규정은 그 어떤 변경도 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도서관에는 지금도 여전히 아날로그 환경에만 적용되던 그대로의 면책만이 주어진다.

5. 호주

호주는 최근 들어 저작권 보호와 시행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 시키고 있는 디지털기술과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8년 저작권법을 대대적

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3년 이상의 협의와 조정을 거친 후에 2000년 10월 17일에 「개정저작권법안(디지털 의제) 2000 (Copyright Amendment (Digital Agenda) Bill 2000)」이 드디어 상하원에서 통과되었고, 동년 9월 4일에는 국왕의 재가를 받아 「개정저작권법(디지털 의제) 2000 (Copyright Amendment (Digital Agenda) Act 2000)」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리고 본 개정법은 2001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⁹⁾

본 개정법은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자와 투자자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 또는 기타 기계가독 형태로 변환시키는 디지털 복제행위를 복제권에 포함시켰고,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저작물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공중전송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여 저작자에게 부여하였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기술조치 규정 등을 제정하였다.

한편, 본 법은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온라인 접근의 편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사용(fair dealing)의 규정(제40조-43조)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정비하였다. 그리하여 본 법은 연구 및 조사, 비평 및 논평, 뉴스 보도 등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공정사용의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본 법은 공정사용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대한 지침(guidance)을 제시하고 있다. 즉 디지털 형태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합리적 부분’(reasonable portion)에 대한 정의(제10조 제2항)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가 ‘연구나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편집저작물, 온라인 음악 및 미술저작물이 아닌 어문저작물과 연극저작물과 같은) ‘문자로 된 디지털 저작물의 10%’(즉 저작물에 수록된 단어 수의 10%)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아날로그 환경에만 적용되던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기존의 예외들의 범위를 확장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도 적용되는 도서관 면책 조항으로 정비하였다. 제49조에서 제51조 A에 걸쳐 규정된 도서관 면책 내용 중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기록보존소가 새로이 부여받은 규정(제49조 - 제51조 A)을 분석한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과 기록보존소는 ‘이용자’로부터의 ‘연구’나 ‘조사’를 위한 요청에 응하여 한 잡지의 하나의 기사 또는 한 저작물의 ‘10%’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다.
- (2) 이용자로부터의 연구나 조사 또는 타 도서관으로부터의 요청에 응해서 저작물을 디

9)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COPYRIGHT REFORM : COPYRIGHT AMENDMENT (DIGITAL AGENDA) ACT 2000. <http://law.gov.au/publications/copyfactsheet/copyfact_sheet.html>

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경우는(예를 들면 전자우편에 의한 전송), 그 저작물이 통상 '상업적인 가격'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 (3) '보존' 및 '내부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권한 있는 직원들'은 소장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 (4) 소장한 자료를 '그 건물 내'의 '공중'이 '컴퓨터 터미널 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디스크상의 복제행위와 같은 디지털 복제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또는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에의 업로딩과 같은 건물 밖으로의 전송은 일체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은 다음 장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우리의 개정 저작권법틀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 (5) 훼손되었거나, 파손되어 전시할 수 없게 되었거나, 또는 분실된 저작물인 경우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1부의 디지털 보존용 복제물을 만들어 그 건물 내에서의 컴퓨터 터미널 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부의 대체용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하드카피나 디지털 복제, 건물 밖으로의 전자우편에 의한 전송 또는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에의 업로딩은 금지하고 있다.
- (6) 또한 본 법은 이용자나 다른 도서관에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 디지털 복제물들은 그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며, 그 복제물은 전송된 직후에 바로 파괴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 (7) 허용되지 않는 침해행위로부터 저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는 공중이 이용하는 컴퓨터 터미널 옆에 저작권 표시(copyright notices)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IV. 우리나라 도서관 면책 규정 분석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디지털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현행 도서관 면책 규정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새로이 제안되어 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¹⁰⁾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10)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제한 문제를 다룬 주요 선행연구를 현행법과 개정안을 대상으로 하여 대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현행법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정경희·이두영(2001)의 연구를 들

국내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정보선진국의 변화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충실한 분석에 있어서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개정안의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비판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고, 우리 도서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놓쳐서는 안될 부분들이 현행법 개정의 면책사유에서 빠지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행 저작권법

우리의 현행 저작권법은 1999년 12월에 개정되어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된 후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은 2000년 7월 27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1)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의 규정 중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에 관한 면책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

관내 이용자에게 열람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서 등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타 도서관으로의 전송을 허용하도록 한 면책 규정은 개정된 현행법이 시행되는 2000년 7월 1일부터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하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디지털 복제도 복제권에 포함되는가 ?

현행법에서는 아래의 정의와 같이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외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디지털 복제를 확실하게 복제권에 수용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확대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컴퓨터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하드디스크나 디스켓에 저장하거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나 CD-ROM 등으로 제작하는 것에는 모두 저작자의 복제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허락 없이 무단으로 디지털 복제를 하는 행

수 있다. 그 외에 우리분야에서는 윤선영(2001)의 연구가, 법조계 측에서는 박익환 (2001), 최병규 (2001)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둘째,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김윤명·정준민(2002)의 연구가 있다.

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3) '전송권'의 신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전송권(제18조의 2)의 신설은 인터넷 등의 컴퓨터통신이 급속하게 발전됨에 따라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함으로써, 유·무선의 구분 없이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즉, 팩시밀리 등의 전자기기를 통하거나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상에 정보를 업로드 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여 디지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새로운 법적 조치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4)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의 규정 중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에 관한 면책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

제28조의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서는 아날로그 복제와 디지털 복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항은 이용자의 사적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한 경우, 다른 도서관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오로지 아날로그 형태로의 복제만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항의 면책은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건의 여지마저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한편 제2항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해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종이기반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도서관간의 전송을 허용하기 위해 새로이 확대된 면책 규율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는 법문은 관내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하드카피 출력이나 전산기억장치에의 저장 및 관외 이용자에 대한 전송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현 규정은 "저작권자나 저작권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며, 저작자 등의 재산권 권리 및 국민의 재산권을 너무 제한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¹¹⁾는 지적을 받았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압력을 받게 만든 법문이 되고 말았다.

11) 許煥成, 『2000 新著作權法 逐條解說·上』. 서울 : 저작권아카데미, 2000. p. 312

-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일시적인 디지털 복제도 복제권 제한에 포함되는가 ?

법 해석 측면에서 볼 때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 또는 컴퓨터 화면에 현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복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저장 행위가 실질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지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아직 없다. 그 주된 이유는 일시적 디지털 복제의 복제권 포함에 대해 권리와 이용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가 팽팽히 대립되어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일시적 디지털 복제가 복제권에 수용되어 저작자의 권리에 포함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의 현행법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일시적인 복제행위를 복제권 침해 행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한 권리도 역시 제한되지 않는다.

(6) 관내 열람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복제나 도서관 상호 전송은 모든 도서관에 적용되는가 ?

신설된 저작권법 제28조 제2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신랄한 비판과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에 단서조항을 추가시켜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복제가 허용되는 도서관에 대한 범위를 아날로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법적 처방을 서둘러 내놓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호에 해당하는 제1호, 제2호의 내용은 종래와 같이 복제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복제에 한하여 그 도서관의 범위를 달리 제한한다는 단서를 신설한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수의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행위를 면책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 복제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을 국립도서관 및 국가지원 하에 구축 중인 디지털도서관 시행 도서관으로 한정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구축의 원활한 지원과 이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함¹²⁾"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도서관계로부터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제2항에 의해 이제야 겨우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기대감을 갖기가 무섭게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의 적용범위를 축소시켜 제한한다는 엉뚱한 단서가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에 신설됨으로써 본래 규정의 취지를 크게 상실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도서관의 실제적인 수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시켰다.

이러한 비판을 초래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디지털 복제가 허용되는 도서관의 대상 선정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기준 없이 설정되어 단지 국립도서관이나 국가 지원 하에 구축중인 일부 디지털도서관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이 사립도서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등 그 선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심각한 결여를 노출시켰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법 제28조제1항 본문(법 제60조제2항 및 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한다.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7)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 이외의 다른 도서관에서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으로부터 복제물을 전송 받아 자체 서버에 저장하여 관내 열람용으로 서비스 하는 행위는 허용되는가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 이외의 다른 도서관에서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으로부터 복제물을 전송 받아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다시 이루어지는 디지털 복제에 해당하므로 도서관 면책에서 제외된다.

(8) 도서관 건물 밖으로의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은 가능한가 ?

현행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도서관 건물 밖으로의 자료를 온라인 전송하는 것은 허

12) 신장환, 개정 저작권법령 해설,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자료, 2000. p. 9.

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건물 내에서라도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인터넷 등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9) 저작권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의 도서 등의 디지털 복제·전송과 관련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조치란 무엇인가 ?

도서관 면책으로 부여된 일정한 범위의 이용을 벗어난 불법적인 디지털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보호 조치가 요구되는 바, 저작권법시행령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문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도서관이 관내 열람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복제·전송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기술적인 조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첫째, 저작물에의 접근은 통제하지는 않지만 자료현시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전송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복제방지장치 둘째, 저작물이 당해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 셋째, 자료현시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로 콘텐츠 보호와 불법복제의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콘텐츠 내에 인간의 눈으로 지각할 수 없는 저작권 등의 추적정보를 삽입하는 디지털 워터마킹과 같은 기술 조치, 넷째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CD-ROM 등의 전자기록 매체를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 | |
|--|
| <p>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p> <p>가. 당해 시설과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컴퓨터 등의 화면에 자료를 나타나게 하는 자료현시 외의 방법으로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p> <p>나.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의 자가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p> <p>다. 컴퓨터 등의 화면상의 자료현시 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p> <p>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p> <p>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p> <p>3.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p> |
|--|

또한 이러한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도서관은 사서 및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고 불법적인 권리침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저작권법의 준수 및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컴퓨터 외관에 저작권에 관한 경고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이용자에 대한 계도도 아울러 병행해야 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동 기술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설치된 기술 조치 등을 회

피하는 자를 규율할 수 있는 조문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 기술조치 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설치된 기술조치 등을 우회하는 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10) CD-ROM 등 전자기록매체의 형태로 유통되는 판매용 저작물에도 도서관 면책이 적용되는가 ?

CD-ROM 등 전자기록매체의 형태로 유통되는 판매용 저작물은 저작자 및 매체 제작자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의 투입을 인정하여 그들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도서관 면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법과 관련한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에 본 내용이 조문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규율은 타 국가의 저작권법들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도서관이 출판계나 전자매체 제작자 등의 권리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 도서관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FAX를 통해 원격지로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 ?

현행법상 FAX를 통한 전송서비스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포함될 수 있으며 관내 열람에 한 한 경우가 아니므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하드카피의 우편서비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종이기반 자료를 복사하여 FAX로 전송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FAX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제권과 함께 '전송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12) 디지털도서관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관외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디지털도서관이 관내 열람이외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관외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도서관이 일일이 저작자와의 개별적인 허락을 얻는 것은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술정보의 디지털 복제 및 온라인 전송과 관련한 이용허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기구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2000년 7월 1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복사·전송권의 집중관리를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 받아 이용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계약에 의해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하는 업무를 위탁 전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¹³⁾ 따라서 도서관은 이 센터를 이용하여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합법적으로 관외 이용자들에게 대한 원활한 정보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권고 받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개정 저작권법률안

(1) 현행 도서관 면책 규정을 정비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 ?

현행 도서관 면책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저작권법 중 추가개정법률(안)¹⁴⁾으로 2001년 6월 4일에 입법 예고되었다. 현행 도서관 면책 규율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국제조약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도서관으로부터의 저작물 구입의 감소를 가져와 학술출판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디지털화를 일부도서관으로 한정시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주목적은 현행 저작권법 시행 상에서 노출된 이러한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2) 이용자의 조사·연구를 위한 경우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디지털 복제가 허용되는가 ?

개정안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도서관 등이 이용자의 조사·연구를 위한 경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에서 디지털 형태의 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는 법 개정이 기술의 발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정보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도모하는 법적 조치로 존재할 때만이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은 본래의 취지대로 실제 디지털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구나 인정하는 21세기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도서관 내 이용자의 조사·연구를 위한 경우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하여 디지털 복제를 허용하도록 면책을 확장하되,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한 단서의 신설 및 기술적 통제 하에 복제할 수 있는 범위의 명기 등 관련 법 규정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13)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http://copycle.or.kr>>

14) 저작권법 중 추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관광부 공고 제 2001-78 (2001년 6월 4일)
<http://www.mct.go.kr/uw3/dispatcher/laws/lawmaking.html?page_num=3>

(3)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 복제가 허용되는가 ?

개정안 동조 제1항 제2호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허용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다만, 면책의 적용 대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은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정보 보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여 당연히 법이 수용했어야 할 조치를 이제야 비로소 취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호는 ‘도서관 등이 자료의’라는 문구가 ‘도서 등’으로 수정되었을 뿐, 종래와 동일하게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단순하게 조문화되어 있다. 때문에 보존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복제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그 적용 범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시킬 수 있으며, 또한 보다 광범위하게 면책을 적용하는데도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인쇄 형태의 희귀본이나 귀중 도서 등 그 가치가 큰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한 경우, 소장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 그리고 도난 등으로 분실된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의 보존용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저장된 저작물을 인지 가능하게 표시하는데 필요한 기계나 장치가 더 이상 제조되지 않거나 상업적인 시장에서 더 이상 합리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저작자의 허락 없이 대체용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사유가 법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요즈음 도서관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출판물 중 전자출판물의 경우, 콘텐츠 그것 자체는 육안으로 볼 수 없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재생을 위한 기술과 장치가 매체와 동시에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보로의 액세스는 끊겨져 버릴 수 있다. 종래의 종이 기반 출판물에 비해 전자출판물은 매체의 수명이 짧고 기술의 구식화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재생기술이 사라지게 되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도서관이 지식의 집합적인 보관소로서 국가의 유산과 학문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장기적 접근을 보장하여 관내 이용자들이 이를 공유할 수 있게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5) 관내 열람을 위한 경우 도서관 등에서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이 허용되는가 ?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정안 동조 제2항은 현행법의 ‘다른 도서관 등에서’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당해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이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관련 시행령에 정해진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도서관들이 관내 열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건물 내에서의 열람을 목적으로 한 전송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관외전송이 금지됨을 못박고 있다.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시행령 제3조 2의 단서가 상위법인 저작권법에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상위법으로 부여한 도서관 등에 복제 및 전송의 권능을 제한한 것이므로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¹⁵⁾ 법제처에서 디지털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 하에 너무 성급하게 무제한의 관외 전송을 허용하는 졸속 처방에 대한 비판을 수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도서관이 소장자료의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상이나 허락 없이 건물 밖으로의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본 항의 수정은 이제야 비로소 잘못된 발상을 바로 잡은 것이라 하겠다.

또한 필자는 여기에서 아날로그 환경 하에서 도서관 면책이 부여된 것은 ‘소장자료’의 이용에 한해서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자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를 강조하다 보니 이러한 점을 자칫 간과한 채, 디지털도서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서관간의 복제 및 전송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저작권은 도서관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것이다. 또한 전국의 도서관이 영세한 출판사나 저작권자들의 책을 구입하는 주 고객이 되고 있어 그들이 도서관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면책을 허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왔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타 도서관으로부터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무리한 발상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6) 관내열람을 위한 복제·전송이 허용되는 경우 신설된 단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

개정안 동조 제2항에 신설된 단서는 관내 열람을 목적으로 한 복제·전송이 허용되는 경우 현행법과 달리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수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도서관 면책이라는 조항은 본래 허락이 필요한 자료의 이용일지라도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대해서 서비스를 행할 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에 한하여 저작물의 자

15) 許燾成, 『2000 新著作權法 逐條解說·上』. 서울 : 저작권아카데미, 2000. p. 315.

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소장도서관의 관내 열람만을 위한 경우로 제한하는 본 항의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를 위한 권리 보호처리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수를 제한하여 면책의 폭을 좁히려는데 있다. 본 항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면책사유의 대 전제 하에서 그 하위 격인 단서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그 부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그 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너무 지나친 제한이며, 동항의 근본 취지와 심각하게 충돌될 소지가 있는 모순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소장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단서도 관내 이용자들의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를 허용할 경우에 고려되면 좋을 듯한 조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이렇듯 잘못된 법적 조치는 저작자나 출판사 등의 저작권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시킴으로써 야기된 듯 싶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초유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수를 제한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욱이 개정안의 본 단서는 본질적으로 도서관 면책의 취지를 퇴색시키며 디지털도서관의 기본적인 특성을 수용치 못하는 불합리한 법적 처방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하겠다.

(7) 디지털 형태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의 경우 디지털 복제·전송은 허용되는가 ?

통상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해당 저작물 권리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 줄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이를 분명하게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도서관 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전송을 함에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할 수 없다.

(8)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하는 근거규정은 무엇인가 ?

현행법에서는 동조 2항 내에서 필요한 권리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동조 내에 4항을 신설하여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서관이 본 안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는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이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당면한 문제이다. 한편 본 안의 운용의 실효성을 위하여 개정안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보호장치를 회피하는 장치나 회피자에 대한 처벌 또는 규제에 대한 조항으로 제92조 제2항 및 제98조 제5호를 신설하여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에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 등을 회피하는 자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한 점이라 평가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서비스와 관련한 도서관 면책 규정을 WCT와 EU 지침, 미국, 일본 및 호주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면밀하게 분석하여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문의 변화와 그 특징을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 1월 공포된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2001년 6월 입법 예고된 바의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 및 전송과 관련한 개정안의 면책 규정을 각각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도서관 면책의 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면책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의 조사·연구를 위한 경우 디지털 형태의 복제 허용
 - ①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아날로그 형태로만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 불충분하므로, '관내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도서관 등이 주체'가 되어 소장된 도서 등의 '합리적인 부분'에 한하여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② 그 저작물을 통상 상업적인 가격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서만 적용되도록 한다.

- ③ 디지털 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 등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음악 및 미술저작물이 아닌 어문저작물과 연극저작물과 같은 문자로 된 저작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④ 디지털복제가 허용되는 ‘합리적인 부분’은 문자로 된 디지털저작물, 즉 저작물에 수록된 단어의 수의 10% 정도로 정의한다.
- ⑤ 이 경우 동시에 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 ⑥ 다량의 정보를 배포하거나 기관 내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사용한 직후 바로 파기하도록 요구한다.

(2) 도서 등의 자체보존과 대체용 디지털 복제물 작성을 위한 조문의 신설 및 정비

- ①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서관 등이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만 단순히 규정하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보존을 위한 도서관 면책 규정으로는 불충분하다.
- ② 희귀본이나 귀중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한 경우와 파손·분실된 경우의 대체 목적을 위한 경우에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 ③ ‘저작물이 저장된 형식이 쓰이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목적에 위한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어 관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면책규정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④ 저작물이 저장된 형식이 쓰이지 아니하는 경우의 대체용 디지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에도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 ⑤ 파손·분실 및 저작물이 저장된 형식이 쓰이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용 디지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도서관 등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물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⑥ 도서관 등이 보존용으로 허용되는 복제규정은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타 도서관으로부터 복제하여 디지털 복제물을 만드는 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⑦ 쓰이지 아니하는 형식이란 ‘어떤 형식으로 저장된 저작물을 인지 가능하게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기계나 장치가 더 이상 제조되지 않거나 상업적인 시장에서 더 이상 합리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의 형식’으로 정의한다.

(3) 관내 열람을 위한 디지털 복제 및 전송 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수를 제한하는 단서의 정비

- ① 제28조 제2항에서 관내 열람을 위한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되,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수를 제한하기 위해 신설된 단서는 면책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하

는 조치이며 동향의 근본 취지와 심각하게 충돌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도서관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치이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② 이를 위하여 개정안의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를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한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디지털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저작권이 있는 원문정보를 관외로 전송하거나 도서관간에 복제·전송 등을 행할 경우에 복제권 및 전송권의 권리처리와 관련하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권리처리 업무를 집중 관리하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측은 실제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저작자 및 출판권자와의 저작물 권리처리를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저작권사용료의 부과 및 저작권자에게 징수된 저작권사용료의 공정한 분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2) 디지털도서관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무단복제 및 무단전송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며, 정당한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인식시키기 위한 홍보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 (3) 도서관이 실제로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드는 기본적인 구입 비용과 이를 디지털화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면책이 주어지더라도, 도서관이 현실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 및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등을 수행하는데 드는 재정 확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關野陽一. “公衆送信權關係の法改正に伴う専門圖書館の今後の課題”, 《専門圖書館》 No. 169 (1998). pp. 27-31.
- 김윤명·정준민.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情報管理學會誌》 제19권, 제2호(2002). pp. 181-201.
- 김태훈.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제49호(2000 봄호). pp. 2-11.
- 大口欣一. “圖書館における複製サービスと著作権”, 《圖書館雜誌》 Vol. 94, No. 2(2000). pp. 94-96.
- 大原壽人. “電子圖書館とサービス有料化のゆくえ”, 《現代の圖書館》 Vol. 36, No.1 (1998). pp. 15-20
- 문화관광부. 저작권법중 추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www.mct.go.kr>>
- 미국 NII 지적소유권 작업반. 임원선 옮김.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6.
- 박익환. “도서관이용과 저작권문제”, 《國會圖書館報》 제38권, 2호(2001. 3·4). pp. 3-18.
- 細井 五. “デジタル情報時代と著作権-電子圖書館の21世紀的運用で著作権の實態化を-”, 《圖書館雜誌》 Vol. 94, No. 3(2000). pp. 196-199.
- 신창환. “개정 저작권법령 해설”,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자료, 2000. pp. 3-12.
- 윤선영.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國會圖書館報》 제38권, 2호(2001. 3·4). pp. 19-33.
- 정경희·이두영.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제18권, 제4호(2001). pp. 127-141.
- 최병규.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제54호(2001 여름호). pp. 19-36.
- 許熾成, 『2000 新著作権法 逐條解説·上』. 서울: 저작권아카데미, 2000.
- 홍재현.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지털복제와 공정사용 법리 적용의 문제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1997. 12). pp. 139-164.
- 황찬현. “전자도서관과 저작권”, 《國會圖書館報》 제33권, 6호(1996. 1·2). pp. 15-29.
-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COPYRIGHT REFORM : COPYRIGHT AMENDMENT (DIGITAL AGENDA) ACT 2000”. <<http://law.gov.au/publications/copyfactsheet/copyfactsheet.html>>
-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opyright: The Specifics. (2000) <<http://www.caltech>>

- edu/ott/security/copyright_tutorial_Specifics.htm>
- Clark, Jeff. "Libraries and the Fate of Digital Content", *Library Journal*, Vol. 126, No. 11(June 15, 2001). pp. 44-47.
- Copyright Amendment (Digital Agenda) Act 2000. No. 110(2000). <<http://scaleplus.law.gov.au/html/comact/10/6223/rtf/110of2000.rtf>>
-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copyright.or.kr/copy/main.asp?ht=../law/law_b_ame.htm&ca=6&se=1>
- Copyright Law Review Committee. Copyright and Contract. (June 2001). <http://law.gov.au/clrc/pres_ref/IssuesPaperJune2001.pdf>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http://www.copyright.or.kr/copy/main.asp?ht=../law/law_b_dig.htm&ca=6&se=1>
-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http://europa.eu.int/eur-lex/pri/en/oj/dat/2001/L_167/L_16720010622en00100019.pdf>
- Gasaway, Laura N. "Values Conflict in the Digital Environment: Librarians Versus Copyright Holders", <<http://www.unc.edu/~uncclng/Columbia-article3.htm>>
- Grosheide, F. Willem, "Copyright Law from a User's Perspective: Access Rights for User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Vol. 23, No. 7(2001). pp. 321-325.
- Henderson, Carol C. "Libraries as Creatures of Copyright: Why Libraries Care about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olicy", (November 1998). <<http://www.ala.org/washoff/copylib.pdf>>
- Lawlor, Bonnie, "The Copyright Revolution : Issues raised during the DMCA rulemaking and their impact on the future of digital information", *Managing Information*, Vol. 8, No.4(May 2001). pp. 58-61, 63.
- The North American Serials Interest Group, Inc.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Key Issues for Serialists", *The Serials librarians*, Vol. 40, No.1/2(2001). pp. 85-103.
- Title 17, Chapter 1, Sec. 108. -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Reproduction by libraries and archives. <<http://www4.law.cornell.edu/uscode/17/108.html>>
- U.S.C Section 108 Redlined to Show DMCA Changes and Clean Copy. <<http://www.utsystem.edu/OGC/IntellectualProperty/108.htm>>
- WIPO Copyright Treat (adopt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December 20, 1996), <<http://www.loc.gov/copyright/wipo/treaty1.html>>

부록 1. 우리나라 도서관 면책 조문

구 법	현 행 법	개 정 안
<p>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p> <p>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p> <p>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p>	<p>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p> <p>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p> <p>2. 도서관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p>	<p>① ----- ----- ----- 시설(당해 시설의 長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 ----- -----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p>1. ----- -----도서관등(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제외한다) ----- 2. 도서 등의 ----- ----- 3. ----- -----도서관 등 ----- -----</p>
	<p>② 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전송을 함에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할 수 없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